

충청북도노인맞이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발의년월일 : '99. 7. 6.

발 의 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장

의안 번호	137
----------	-----

제안이유

- 조례의 내용에 일치하도록 수정보완 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- 문구수정 보완 (내용중 “노인”을 삽입)

첨 부

- 충청북도노인맞이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부
- 신구조문 대비표 1부

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설치및운영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중 “치매질환”을 “노인 및 치매질환자”로, “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”을 “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”으로 한다.

제3조 제3호중 “치매환자”를 “노인 및 치매환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선 · 구조문대비표

현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치매질환</u>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5조 및 의료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<u>충청북도치매요양병원</u>(이하 “치매요양병원”이라 한다)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노인 및 치매질환자.....<u>충청북도노인및치매요양병원</u>.....</p>
<p>제3조(업무) 치매요양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 1.-2. (생략) 3. 기타 <u>치매환자</u>의 진료와 요양에 관한 사항</p>	<p>제3조(업무) 1.-2 (현행과 같음) 3. 노인 및 치매환자.....</p>